

도시관리계획(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2호(2012. 1. 26.)로 결정(변경)된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11 월 5 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가. 결정(변경) 취지

-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-3번지 일대 획지계획 및 기타사항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
나. 도시관리계획(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-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구번호	기 정			변 경			비 고
	지번	면적(㎡)	획지계획	지번	면적(㎡)	획지계획	
C-6-1, 2 (영등포동3가)	1-1대	81.7	공동개발지정 및 권장	1-1대	81.7	공동개발 지정	대상지
	1-2대	154.0	(1-1대, 1-2대 지정)	1-2대	154.0		
	1-3대	252.6	(1-2대, 1-3대 권장)	1-3대	252.6		
	1-4대	186.4	공동개발권장	1-5대	108.4	단독개발	
	1-5대	108.4		1-4대	186.4		

-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(변경)조서: 차량출입금지구간

구 분	적용대상	적용기준	비고
차량출입 금지구간	폭25m이상 간선도로변	• 폭 25m 이상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지구 단위계획에서 정한 차량출입금지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	공동개발 변경에 따른 차량출입을 위하여 위치조정 폭10m→폭13m

※ 상기 내용 외 기타 변경사항 없음.

다. 관계도면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공보에 고시를 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
라. 열람장소: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(☎2670-3542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